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

(서도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의의원 : 서도원 의원,

신달호 의원, 최재규 의원

1. 제안이유

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구임대주택”이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.
2. “공동전기요금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(단지 가로등 포함), 산업용(저수조·정화조), 승강기, 공용부분 복도·계단 조명, 관리동,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그 밖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. 다만,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구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중 다음 각 호의

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조명, 관리동 공동시설 전기요금
2. 단지 내 산업용(저수조·정화조) 및 보안등(단지 가로등 포함) 전기요금
3.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

제4조(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) ①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매월 청구하고,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증설로 지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

제5조(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(제4조 관련)		
신청자	주 택 (단 지)명	
	소 재 지	
	관리사무소 명칭	
	전 화 번 호	
사 용 기 간		
지원신청내용		
신청금액 합계		
<p>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년 월 일 신 청 인 : ○○○○○소장 직인 </p> <p>달성군수 귀하</p>		
첨부서류 1. 청구서 및 증빙서류 2. 전기료 등 납부 영수증		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m²)

□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(2025. 8. 5. 타법개정, 2025. 8. 7. 시행)

제2조(공공임대주택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
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2. 국민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주택도시기금”이라 한다)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3. 행복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3의2. 통합공공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4. 장기전세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5.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: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6.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(이하 “기존주택등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7.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(轉貸)하는 공공임대주택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
지원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공동전기요금 지원(안 제3조)에 필요한 사업에 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이 규정됨에 따라 재정수반이 예상됨(안 제4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대구옥포 천년나무2단지 총 세대 수 1,366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80세대로 14% 가량임.
- 2024년 기준 (1) 공동전기요금(4,133,264원), (2) 급수전기(19,895,520원), (3) 가로등 전기(7,259,860원)으로 총 31,288,644원으로 이를 영구임대주택 대상(전체 세대수 중 14%)에 적용할 경우 연간 4,380,410원입니다.
- 연평균 440만원 가량 재정수반이 발생될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)에 해당함.

작성 자

소속 및 직위

달성군의회 의원

성명(연락처)

서도원 (☎ 2291)